

이 자료는 118
 보도자료 주시기를 바랍니다.

 건설교통부 MINISTRY OF CONSTRUCTION & TRANSPORTATION	보 도 자 료 MOCT News Release	부 서	도 시 국 도시정책과
		과 장	정 완 대
	www.moct.go.kr 총 3 매	사무관	업 정 회 jhuhm@moct.go.kr
		☎	2110-8167

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허용

-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 -

-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'03.1.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(약칭 “국토계획법”) 제정·시행으로 금지되었던 1만㎡ 이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

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·보완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'05.1.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-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,

- ①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㎡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. 다만, 자연환경 및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

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하였다.

* 국토계획법 시행('03.1.1)으로 부지면적 1만㎡미만 소규모 공장
신설을 금지

○ 이는 1만㎡ 미만의 소규모 기존공장의 증설은 허용했으나
신규공장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있어 **창업 및 중소기업의
원활한 산업활동에**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

②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 확보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
기준과 일원화하였다.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
허가 및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
도로 확보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건축법에 의한 기준으로 통일
한 것이다.

* 건축허가시에는 진입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폭이 2m까지 완화
되며 주변에 통행로로 사용될 수 있는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
확보가 면제되지만,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4m이상 도로 확보를 의무
화하여 3m이하의 도로가 대부분인 농촌지역의 경우 건축행위가
곤란한 사례 발생

③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
관리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 청취와 함께 별도로 거치도록
되어 있는 시·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하였으며

○ 도시관리계획을 입안·공고할 때 현재 시행중인 Off-line 매체 외에 **On-line** 상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토록 의무화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**사회갈등 해소** 노력을 강화토록 하였다.

□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5.2.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(참조 : 도시정책과장,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, 전화 : 02-504-9187, FAX : 02-503-9181)에게 제출이 가능하며, 건설교통부 홈페이지(www.moct.go.kr/정보마당/법령자료/입법예고)에서 해당법령의 열람이 가능하다.